

[집합투자기구 변경 안내]

가. 대상 펀드 : 교보약사 파워브릭스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주식)

나. 변경 시행일 : 2015년 1월 12일(월)

다. 변경 대상 서류 :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라. 주요 변경 내용 :

[집합투자규약]

구분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45조(집합 투자기구의 해지)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① (생략) ② (생략) 1. ~ 4. (생략) <u><신설></u> ③ (생략) ④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u>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u>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u>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u>1개월 이내에 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의 합병,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전환, 투자신탁의 존속 등이 투자신탁의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u>

[투자설명서]

구분	사유	정정전	정정후
[표지] 효력발생일	효력발생일 변경	<u>2014년 9월 16일</u>	<u>2015년 1월 12일</u>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14.10.01)사항 반영	<u><신설></u>	<u>11.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 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www.kyoboaxa-im.co.kr) 홈페이지</u>

			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 구에 관한 사항 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연혁 신설	<신 설>	1)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확대 (채권 투자대상에 전자단기사채 추가, 환매조건부매수 신설,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 변경) 2) 기업공시서식기준 개정 ('14.10.01)에 따른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신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4) 세부 운용전략 및 비교지수 변경
제2부. 집합투자기 구에 관한 사항 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②이 투자신 탁이 투자하는 모 투자신탁의 투자대 상"	이 투자신탁이 투 자하는 모투자신 탁의 투자대상 확 대	채권 -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채권 -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
		집합투자증권등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하	집합투자증권등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
		<신 설>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액으로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매매계약)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이하
제2부. 집합투자기	운용전략 문구 변	- 종목 구성시 기준지수 : MSCI	- 종목 구성시 기준지수 : MSCI

구에 관한 사항 중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경	<u>BRIC 10/40 Index</u> - 포트폴리오 구성원칙 및 종목 리밸런싱시 종목 구성비 중 : <u>85% 수준</u> - 비교지수 : <u>[MSCI BRIC Index 85%] + [Call * 15%]</u>	<u>BRIC Index</u> - 포트폴리오 구성원칙 및 종목 리밸런싱시 종목 구성비 중 : <u>90% 수준</u> - 비교지수 : <u>[MSCI BRIC Index (KRW) * 90%] + [Call *10%]</u>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중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u><신 설></u>	- <u>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u>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중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나. 임의해지에 관한 사항 및 절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중 소규모펀드 임의해지에 관한 사항)	법에서 규정한 소규모 투자신탁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을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u>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u>	법에서 규정한 소규모 투자신탁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을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u>1개월 이내에 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의 합병,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의 전환, 투자신탁의 존속 등 이 투자신탁의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u>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사유	정정전	정정후
[표지] 효력발생일	효력발생일 변경	<u>2014년 9월 16일</u>	<u>2015년 1월 12일</u>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14.10.01)사항 반영	<u><신 설></u>	<u>11.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 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www.kyoboaxa-im.c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u>
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중 '2. 투	운용전략등 변경	- 종목 구성시 기준지수 : <u>MSCI BRIC 10/40 Index</u>	- 종목 구성시 기준지수 : <u>MSCI BRIC Index</u>

<p>자산 전략 및 위험 관리</p>		<p>- 포트폴리오 구성원칙 및 종목 리밸런싱시 종목 구성비 중 : <u>85% 수준</u> - 비교지수 : <u>[MSCI BRIC Index 85%] + [Call * 15%]</u></p>	<p>- 포트폴리오 구성원칙 및 종목 리밸런싱시 종목 구성비 중 : <u>90% 수준</u> - 비교지수 : <u>[MSCI BRIC Index (KRW) * 90%] + [Call * 10%]</u></p>
----------------------	--	--	--